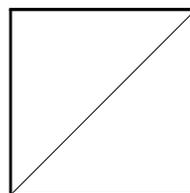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224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6. 24. (제 12 차)	

(주)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한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연월일	2020. 6. 24.

1. 의결주문

(주)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(주)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(주)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) 제1항 및 제52조(과태료) 제4항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) 및 제38조(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4] 과태료의 부과기준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제1항,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제1항 및 제19조(과태료 부과에 제척기간) 제1항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
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및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5.28.) 심의필

<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관련 사항>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하여 납부토록 함

<별지>

(주)한빛자산관리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- (주)한빛자산관리대부 : 과태료 1,480만원 부과

2. 조치사유

가.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

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

- (주)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5.7.16.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회생채권 ▲▲건*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하였으며 (2019.5.29. 오등록 연체정보 삭제 완료),

* 2015.7.16. (주)△△대부로부터 매입한 것이며, 모두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님

2018.12.3.~2019.5.17. 기간 중 연체사유가 해소된 대부채권 ◆◆건*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지 아니 하였음(2019.5.29. 연체정보 해제처리 완료)

* 채무자의 자진변제◎◎건), 신용회복지원 등(●●건)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52조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, 제38조

관 계 법 규

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제18조(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)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.

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·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,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~4. (생략)

5.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

6.~14.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⑥ (생략)

□ **舊**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2015.9.12. 법률 제13216호로 시행되기 직전의 것)

제52조(과태료) ①~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~3. (생략)

4.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

4의2.~16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(생략)

③ 신용정보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(이하 "신용정보회사등"이라 한다)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·변경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~⑥ (생략)

제38조(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.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(생략)

나.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1)~2) (생략)

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
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

다.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1)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
3) (생략)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가. ~ 카. (생략)		
타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·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	법 제52조제4항 제5호	1,000
하. ~ 느. (생략)		

부칙 <대통령령 제26517호, 2015. 9. 11.>

제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舊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15.9.12. 대통령령 제26517호로 시행되기 직전의 것)

제38조(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8조 관련)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금액
1.~4. (생략)		
5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52조제3항제4호	600
6.~25. (생략)		

□ 舊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(2017.10.19.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1. (생략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을 산정한다.

다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

라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마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고의	과실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75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75%	법정최고금액의 5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50%	법정최고금액의 25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3.12.20>

- (1) 중 대 :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

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금융업관련법상의 법정최고금액을 넘지 못하며, 나.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%를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가. 가중 사유

- (1) ~ (4) (생략)

나. 감경 사유

- (1) ~ (2) (생략)
- (3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%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4) ~ (9) (생략)

5. 과태료 부과 면제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~ (6) (생략)

6. 기 타

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□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- ② (생략)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과징금 부과기준 및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

1. (생략)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(생략)

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위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
다. ~ 바. (생략)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
(2) 보 통 : '중대', '경미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
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(이하 "예정비율"이라 한다)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(생략)

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, 나목(5), (6) 및 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가. ~ 나. (생략)

부칙 <제2017-38호, 2017.10.19.>

제2조(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(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,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~ ③ (생략)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제19조(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)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(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)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한빛자산관리대부

2. 제재조치일 : 2020. 6. 2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 재 내 용
기 관	기관주의, 과태료 1,680만원
임 원	주의 2명
직 원	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, 견책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

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에 의하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

○ 2018.12.5.~2019.1.30. 기간 중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○○명에게 □□건의 전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았음

< 관련규정 >

1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제21조
2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

(2)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신용정보의 등록·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
- (주)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15.7.16.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개인회생채권 ▲▲건*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하였으며 (2019.5.29. 오등록 연체정보 삭제 완료),

* 모두 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개인회생채권을 2015.7.16. (주)△△대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연체정보 등록대상이 아님

2018.12.3.~2019.5.17. 기간 중 연체사유가 해소된 대부채권 ◆◆건*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해제하지 아니 하였음(2019.5.29. 연체정보 해제처리 완료)

* 채무자의 자진변제◎◎건), 신용회복지원 등(●●건)

< 관련규정 >

1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제52조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, 제38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데이터정책과	여신금융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97	02-3145-8272